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 12차 행정안전위원회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512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총괄적 검토	2
2. 개별 검토	4
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4
나. 자연재해대책법	7
다. 재해구호법	10
라. 풍수해보험법	12
마.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4
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17
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9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도읍의원 등 11인
2. 제안연월일 : 2024. 09. 02.
3. 회부연월일 : 2024. 09. 0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Ⅲ. 검토의견

1. 총괄적 검토

종래 민법(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민법'이라 함)은 의사능력이 부족한 성년자를 위한 보호제도로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규정하고 있었음. 그러나 개정 전 민법의 행위능력 및 후견제도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 부정적 용어를 사용하고, 본인의 의사와 장애의 정도에 대한 섬세한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여 사회적 편견을 일으키는 한편, 보호의 대상을 재산적 법률행위로 제한함으로써 복리에 관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없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음.

또한 법정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의사나 복리, 법정후견인의 의지나 능력, 친소관계 등의 고려 없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되어 적정한 후견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음.

이에 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된 민법(이하 '개정 민법'이라 함)은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현재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은 물론 미래에 정신적 능력이 약해질 상황에 대비하여 후견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재산 관리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로 확대·개편하여 2013. 7. 1. 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음. 즉 성년후견제도는 개정 전 민법의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보호를 요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다양한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것으로, 그의 제한된 행위능력을 성년후견인의 지원을 통하여 보완해 줌으로써 노령,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사람을 보호하고 존중하여 그의 잔존능력을 활용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음¹⁾).

그런데 종래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던 개별 법률에서는 개정 민법 시행 이후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단순히 용어만 대체하는 방식으로 정비하는 경향이 있었음.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가정법원이 예외적으로 법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정한 범위에서 행위능력이 제한될 뿐 원칙적으로 모든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데, 법령에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있음에도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직무에서 원천 배제하는 것은 피한정후견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이에 개정안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등 7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도선사업자,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의연금품 모집자, 손해평가인, 사격장 설치자, 사행행위영업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업자,

1) 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8헌바130

총포·화약 안전기술협회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하려는 것으로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한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의 성격상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지식이나 상당한 주의의무가 수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개별 법률을 대상으로 ① 자격시험, 인·허가 요건, 그 밖의 검증수단을 통해 직무수행능력 판단 과정이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② 심신장애 등 정신적 제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자격에서 해임·해촉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직역의 특수성 및 공익과의 밀접성, ④ 유사 직역의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 개별 검토

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은 유·도선사업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6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유·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	제6조(결격사유) ① ----- ----- -----

를 할 수 없다.	-----.
1. <u>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 한정후견인</u>	1. <u>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u>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유선사업은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遊樂)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하고, 도선사업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내수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을 말함²⁾.

현행법³⁾은 유선사업과 도선사업 면허의 기준으로 신청자가 보유한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과 선박 및 시설·장비·인력의 기준을 정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기준에 적합한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유지·관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면허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의 직무수행 능력을 판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선사업**”이란 유선 및 유선장(遊船場)을 갖추고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遊樂)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도선사업**”이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내수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조(시설기준 등) 유·도선사업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과 시설·장비·인력을 갖추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의2(면허의 기준) ① 관할관청은 유·도선사업의 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면허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유·도선사업 면허 신청자가 보유한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船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유·도선사업 면허 신청자가 보유한 선박과 시설·장비·인력이 제4조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 ② 관할관청은 유·도선사업을 신고하려는 자가 보유한 선박의 선령이 제1항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단하는 별도의 절차나 정신적 제약으로 임무수행이 제한될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유·도선사업은 연평균 약 1,500만명의 이용객이 있는 사업으로 수상을 영업구역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유선 및 도선 사업자는 현장에서의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대처 능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직무수행 역량을 검증하거나 정신적 제약으로 임무수행이 제한될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마련하지 않고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연 평균 유선 및 도선 이용객>

(단위: 천명)

구 분	계	'18	'19	'20	'21	'22	'23	비고
계	86,743	17,155	18,138	9,977	11,451	15,299	14,723	
내수면	22,509	4,664	5,009	1,912	2,899	3,957	4,068	
해수면	64,234	12,491	13,129	8,065	8,552	11,342	10,655	

※ 자료 : 행정안전부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유선 및 도선 사업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나.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은 방재관리대책대행자⁴⁾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39조(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u>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2. ~ 4. (생략)	제39조(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 ----- ----- 1. <u>피성년후견인</u> 2. ~ 4. (현행과 같음)

방재관리대책대행자는 현행법⁵⁾ 제38조제1항 각 호의 방재관리대책 업무와 관련 기초·타당성 조사, 분석, 기본·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을 대행하는 자를 말함.

4)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방재관리대책대행자”란 재해영향성검토 등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제38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①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방재관리대책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는 기초·타당성 조사, 분석, 기본·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2.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정비계획,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2의2. 제15조의2에 따른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3.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4.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4의2.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4의3. 제21조제2항에 따른 침수흔적도 작성

5. 제37조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6. 제57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대행자의 선정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 [별표 3] 은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등록 요건⁶⁾을 규정하고 있는데,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당사자에 관한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방재 분야 연구소·법인으로 등록된 기관·단체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⁷⁾는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술사 등록을 한 사람이 개설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의9제1항제3호에서는 정신적 제약으로 해당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술사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의 경우 직무수행 능력과 정신적 제약으로 인한 임무수행 제약과 관련 제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임.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3]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요건(제32조의2제3항 관련)

1. 일반적 기준

가.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 2)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
- 3)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방재 분야 연구소·법인으로 등록된 기관·단체

나. ~ 다. (생략)

2. 대행자 인력 확보 기준

가. ~ 마. (생략)

7) 「기술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술사"란 해당 기술 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제5조의7(등록 및 등록 갱신)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행하고자 하는 직무의 종류 및 범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의9(등록 및 갱신된 등록의 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의7에 따른 등록 및 등록 갱신을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정신적 제약으로 해당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등) ① 기술사가 개업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개설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의 기술사가 합동기술사사무소(이하 "합동사무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런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⁸⁾의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자 당사에 대한 자격기준과 정신적 제약으로 임무수행이 제한될 경우에 대한 제한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방재 분야 연구소·법인으로 등록된 기관·단체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기술안전품질원(現 한국농어촌공사 안전진단본부), 한국수자원공사 3개 기관이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현재 3개 기관 모두 휴업·폐업 상태이며⁹⁾, 법령 및 각 기관의 정관·규정에 해당 기관·단체와 관련된 별도의 자격기준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¹⁰⁾

방재관리대책 대행 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분야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엔지니어링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직무수행 능력 판단 절차나 정신적 제약으로 임무 수행이 제한될 경우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 없이 피한정후견인을 방재관리대

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①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고한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9) 2024년 4월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과 기술안전품질원의 경우 업무 전부 폐업(2017. 2. 6., 2018. 3. 30.)하였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에 대해 전체 휴업 중임(~2028. 4. 24.)

10) 「한국농어촌공사 직제규정」(한국농어촌공사규정) 제11조(농어촌연구원) 농어업·농어촌개발 등에 관한 연구수행을 위하여 농어촌연구원을 둔다.

제12조의2(안전진단본부) 농업기반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진단 등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안전진단본부를 둔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수자원공사를 설립하여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책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분야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행 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다. 재해구호법

개정안은 의연금품¹¹⁾을 모집하려는 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7조(의연금품의 모집허가) ①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할 수 없다. 1. <u>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2. ~ 6. (생략) ⑥·⑦ (생략)	제17조(의연금품의 모집허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1. <u>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u> 2. ~ 6. (현행과 같음) ⑥·⑦ (현행과 같음)

11) 「재해구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의연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부금품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구호를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의연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부금품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구호를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하고, 의연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의연금품을 모집할 수 있음.

현행법¹²⁾은 의연금품의 접수장소, 접수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검사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속임수 등으로 의연금품을 모집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연금품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음.

12) 「재해구호법」 제19조(의연금품의 접수장소 등) ① 의연금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②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의연금품의 접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匿名) 기부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모집종사자는 의연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후 5일 이내에 모집자에게 접수내용과 접수금품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22조(검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의연금품의 모집 또는 접수행위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모집자나 모집종사자에게 관계 서류·장부 또는 그 밖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모집자의 사무소·모금장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3조(허가의 취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모집된 의연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모집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연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경우
2. 모집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모집계획서와 다르게 의연금품을 모집한 경우
3. 모집자가 제17조제5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중 제17조제5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의연금품을 접수한 경우
5.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연금품을 내도록 강요한 경우
6.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제22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 등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7. 모집자가 모집한 의연금을 제26조제2항에 따라 개설한 계좌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8.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부·서류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모집자는 의연금품을 기부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기부한 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의연금을 제26조제2항에 따라 개설한 계좌에 납입하여야 하고, 반환할 의연물품을 해당 지역구호센터에 전달하여야 한다.

③ 모집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연금품의 반환을 마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의연금품의 모집 허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한정후견인을 의연금품의 모집허가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피한정후견인에게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을 인정하는 「민법」의 취지를 반영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임.

라.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손해평가인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3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손해평가인)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손해평가인이 될 수 없다. 1. (생략) 2. <u>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3. ~ 5. (생략) ④ (생략)	제16조의2(손해평가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u>피성년후견인</u> 3. ~ 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¹³⁾상 손해평가인은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13)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태풍·홍수·호우(豪雨)·강풍·풍랑·해일(海溢)·대설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 1의2. “지진재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6. “손해평가”란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사정(査定)하는 것을 말한다.
7. “손해평가인”이란 제16조의2에 따라 손해평가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제16조의2(손해평가인) ① 손해평가인이 되려는 사람은 보험목적물에 관한 전문적 경험과 지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거나 인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 손해평가인은 손해평가인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거나 인정하는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1조(손해평가인의 자격 요건 등) ① 손해평가인이 되려는 사람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보험목적물을 5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을 것
2. 공무원으로서 보험목적물 또는 재난관리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을 것
3. 보험회사나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보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거나 손해평가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을 것
4. 전문대학의 보험 또는 재난관리 관련 학과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받았을 것(「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경우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80학점 이상을 이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험 또는 재난관리 관련학을 3년 이상 교육한 경력이 있을 것
6.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에 따라 손해평가인의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을 것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손해평가인 교육)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이하 “손해평가인 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며, 손해평가인 교육의 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2.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종류별 약관
 3. 손해평가의 절차 및 방법
 3. 손해평가의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② 손해평가인 교육의 이수기준은 20시간 이상으로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이 되려는 사람이 외부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교육을 받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수를 확인받은 경우에는 손해평가인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일 것
 - 가. 보험 또는 재난 관련 전문기관·단체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중 보험 또는 재난 관련 전공이 있는 대학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인 교육의 내용 및 이수기준을 모두 갖춘 교육일 것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해평가인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손해평가인 보수교육) ① 손해평가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보수(補修)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손해평가인 교육을 받은 후 2년이 지난 경우
 2. 직전 보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지난 경우
- ②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1.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종류별 약관
 2. 손해평가의 절차 및 방법
 3. 피해 유형별 손해평가 사례 연습
- ③ 보수교육의 이수기준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 ④ 손해평가인이 외부에서 받은 교육의 보수교육 인정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손해평가인 교육”은 “보수교육”으로 본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해평가인 보수교육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사정하는 사람으로, 보험목적물에 관한 전문적 경험과 지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교육 및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손해평가인에 대한 일정한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자질과 능력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손해평가인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손해평가인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할 경우에는 정신적 제약으로 임무수행이 제한될 경우 손해평가인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손해평가인의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바, 손해평가 현장조사 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업무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질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마.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사격장의 설치허가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사격장의 설치허가(이하 “사격장 설치허가”라 한다)를 받을 수 없다.	제7조(결격사유) ----- ----- ----- ----- -.
1. <u>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 미성년자</u>	1. <u>피성년후견인 · 미성년자</u>
2. ~ 8. (생략)	2. ~ 8. (현행과 같음)

현행법 및 동법 시행령¹⁴⁾은 사격장의 설치허가와 관련하여 사격장 설치설계도, 사격장의 위치 및 구조·설비 도면, 사격장 주변 200미터

1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사격장의 종류 등) ① 사격장은 실외사격장과 실내사격장으로 구분하고, 그 종류·구조·위치·설비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격장설치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격장의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사격장의 설치허가) ① 사격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찰서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격장의 위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구조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사격장 및 석궁사격장: 경찰서장
2. 제1호 외의 사격장: 시·도경찰청장

② 제1항에 따른 사격장의 설치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사격장의 설치허가 신청) ① 법 제6조에 따라 사격장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치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격장 설치 장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기총사격장 또는 석궁사격장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격장 설치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격장 설치설계도
2. 사격장의 위치 및 구조·설비 도면
3. 사격장 주변 200미터 이내의 약도
4. 사격장 관리규정
5. 사격장에 갖추어 둘 총기 또는 석궁의 종류 및 수량
6. 사격장으로 사용할 부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격장으로 사용할 부지 또는 건물의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의 사격장 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자와 사용자의 관계
2. 종업원의 배치와 그의 임무
3. 위해(危害) 방지설비와 그 관리요령
4. 사격장 사용자의 준수사항
5. 사용요금(시간단위, 게임단위, 총포단위 등으로 표시한다)

④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라 사격장의 설치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격장 설치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내의 약도 등 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있을 뿐 사격장 설치허가 대상자의 직무수행 능력을 판단하는 별도의 절차나 정신적 제약으로 임무수행이 제한될 경우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그런데,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사격과 사격장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격장 설치자는 사격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하고 다량의 총포·화약류·석궁을 취급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격장 설치허가의 대상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별도의 직무수행역량에 대한 검증이나 정신적 제약으로 임무수행이 제한될 경우에 대한 제한 규정 등을 마련하지 않고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경찰청은 다량의 총포·화약류·석궁을 취급하는 사격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설치허가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개정안은 사행행위영업 허가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호가목).

현행	개정안
제6조(허가의 제한)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의 허가(이하 “영업허가”라 한다)를 할 수 없다.	제6조(허가의 제한)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 ----- -----
가. <u>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가. <u>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u>
나. ~ 아. (생략)	나. ~ 아. (현행과 같음)
3. (생략)	3. (현행과 같음)

현행법¹⁵⁾은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행정안

- 15)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사행행위영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 가. **복권발행업**(福券發行業): 특정한 표찰(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 나. **현상업**(懸賞業):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답을 제시하거나 예측이 적중하면 이익을 준다는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그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 다. **그 밖의 사행행위업**: 가목 및 나목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 추첨, 경품(景品)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을 이용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 제3조(시설기준)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사행기구를 갖추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허가의 요건) ①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의 허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영업을 허가할 수 있다.
1.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사행기구를 갖추고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행행위영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사행행위영업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국민생활을 해치는 지나친 사행심의 유발을 방지하고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한 것임.

사행행위영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나친 사행심 유발 방지 등을 위해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에서 영업하는 등 영업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허가 대상자의 직무수행역량을 점검하거나 정신적 제약으로 임무수행이 제한될 경우 사행행위영업의 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사행행위영업 허가의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
- 2. 상품을 판매·선전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관광 진흥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 시행령」 제3조(허가요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5조제1항 각호의 허가요건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공공의 안녕질서 및 선량한 풍속의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1.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법 제5조제1항제1호 관련)
 - 가.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구제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후원을 받는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 다. 공공기관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 2. 상품의 판매진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법 제5조제1항제2호 관련) 자기회사에서 생산하는 상품 또는 자가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국내외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삭제 <1995.3.6>
- 4. 관광진흥과 관광객의 유치촉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법 제5조제1항제4호 관련)
 - 가.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한 관광숙박업중 1등급이상의 관광호텔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중 종합휴양업소의 동일구내에서 사행행위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관광진흥과 관광객의 유치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외국간을 왕래하는 5천톤급이상의 여객선 안에서 사행행위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참고로 경찰청은 동법은 사행행위 관련 영업을 규제하고 처벌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피한정후견인에게 사행행위 영업허가를 할 경우 불법 사행행위 영업 가능성이 증가하므로 현행대로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자 및 총포·화약 안전기술협회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호 및 제55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5조(제조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 4. (생략) 5. <u>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u> 6. ~ 8. (생략)	제5조(제조업자의 결격사유) ----- ----- ----- ----.
제5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u>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u> 2. ~ 6. (생략)	제55조(임원의 결격사유) ----- ----- -----.
	1. <u>피성년후견인</u> 2. ~ 6.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7조¹⁶⁾는 총포·도검 등의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조(제조업자의 결격사유)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제조업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할 경우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결격사유에서도 제외되게 됨.

먼저, 총포·도검·화약류 등 제조업자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현행 법령¹⁷⁾은 제조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체검사서를 포함한 각종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조업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판단 기준을 두고 있으며,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¹⁸⁾하고 있어 정신적 제약으로 임무수행이 제한될

1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결격사유)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판매업 및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임대업의 허가의 경우에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17)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조(제조업의 허가) ① 총포·화약류의 제조업(총포의 개조·수리업과 화약류의 변형·가공업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제조소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의 위치·구조·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제조하는 총포·화약류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제조소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의 위치·구조·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제조하는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 ⑤ (생략)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허가신청) ①법 제4조제1항 전단 또는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이하 “제조업”이라 한다) 또는 화약류의 변형·가공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제조업허가신청서를 허가관청인 경찰청장 또는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의 서류는 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첨부한다.

1.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한다)

2. ~ 7. (생략)

③ (생략)

1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① 허가관청은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조제4항에 따라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된 총포·도검

경우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등 제조업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법 적용시 총포·도검·화약류 등 제조업자의 “정신적 제약”이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관련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영업정지도 최장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여 충분한 기간으로 보기도 어려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위험성 및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다량의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취급할 수 있는 제조업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음, 총포·화약 안전기술협회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하는 것과 관련하여,

-
- 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 또는 석궁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출시킨 경우
 - 3. 제4조·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제조·판매·임대시설 설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제5조(제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5조제8호(제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게 된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 4. 제43조에 따른 기간 내에 완성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 5. 사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 6. 지정된 기한 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7.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8.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② (생략)

총포·화약 안전기술협회¹⁹⁾는 총포·화약류 등의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조사·연구, 총포 등의 안전검사 및 화약류 안정도 시험 등 그 사업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데, 임원의 자격기준과 정신적 제약으로 임무수행이 제한될 경우 해임·해촉할 수 있는 보완규정도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총포·화약 안전기술협회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참고로 경찰청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총포·도검·화약류 등 제조업자와 총포·화약 안전기술협회 임원은 부적격자의 사전 배제를 위해 결격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에서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5

19)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사업)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조사·연구
2.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안전검사 및 화약류 안정도 시험
3.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운반·사용·저장 등의 기술 및 시설에 관한 연구·개발·보급
4.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안전사상의 계몽 및 홍보
5.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안전 및 기술에 대한 교육
6.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안전에 관한 자료 수집과 기술서적 등의 간행 및 배포
7.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안전에 관한 기술도입 및 국제협력
8.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안전을 위한 행정업무에 관한 기술 자문
9.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안전에 관하여 경찰청장이 위탁한 업무
10. 그 밖에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